

것임.

-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탑습하지 말고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착오등의 실수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업무지시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됨.
- 집행기관에서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.

나. 健議事項

- 본조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발견하여 시정 토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은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시정하고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은 물론 예방 감시활동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.

다. 處理意見

-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'95. 11. 24.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.

마포구 하중동58-2부터 상수동282-1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

1995. 11. 9.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청원인 주소 : 마포구 하중동 82-4
성명 : 전춘환 외 740인
- 나. 소개의원 : 한대운의원
- 다. 접수일자 : '95. 10. 11.
- 라. 회부일자 : '95. 10. 13.
- 마. 상정일자 : 제34회의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95. 11. 8.) 상정, 질의토론, 의결

2. 청원요지

본 청원은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,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'96년초에는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.

3. 취지 설명의 요지(소개의원 한대운 의원)

마포구 하중동 58-2부터 상수동 282-1까지 폭 6M,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'96년초에 개설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위치역은 '9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(고시 제1994-81호)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을 하고 마포구(고시 제3호)에서도 '95. 2. 13일자로 지적고시된 소방도로(일반도로)로서 도시계획공고까지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개설되지 못하여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으며 강변도로변으로 소음은 물론 먼지와 매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,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 주민의 이런 불편한점을 십분 감안하여 꼭 소방도로가 신설될 수 있기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망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본 청원의 요지는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,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 지역은 강변북로 대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환경조건과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, 이를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도로의 개설만이라도 되어야만 제반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

○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-3호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도로 개설 사업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마포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어 공사 우선순위와 보상비를 포함한 약 1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동공사 비용의 확보가 우리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다고 사료되나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15M 이하로 구정에서 개설해야되는 91건의 소방도로가 근년에 된 것인지 30~40년전부터 내려

오던 것이 잔재하는 것입니까?

○ 답변요지(건설국장 신동문) : 20년 이상이 30건, 10년 이상이 19건으로 49건이 10년이상된 도로이고 10년이 안된 것이 나머지입니다.

○ 질의요지(유응봉 위원) : 보상비를 금년에 세워주고 계속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해서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요?

○ 답변요지(건설국장 신동문) :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면 사업추진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.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

○ 질의요지(김세창 위원) : 지적고시가 되면 집수리도 못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.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면 합니다.

○ 답변요지(건설국장 신동문) : 현장방문등 면밀한 검토후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의견 : 의견서 채택

10. 기타사항

○ 현장답사 : '95. 11. 8. 11:00~12:30